

계룡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자치법규(이하 조례·규칙을 말한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2. 보건, 공중위생, 환경
3. 농림, 수산, 경제
4.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5. 도로교통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일간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일간신문·컴퓨터 통신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 주제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충청남도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되었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